

## 개인신용손해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상해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개인신용손해보험

3. 보험의 목적 : 피보험자의 신체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 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.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주기
1년	일시납, 2회납, 4회납, 12회납
2년, 3년	일시납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자동갱신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 
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.
- 2)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 
회사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를 2억원으로 한다.
- 3)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 
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함  
(2012년 4월 1일 이전 자동갱신특약 첨부 계약의 갱신에 한하여 판매함)
- 4) 판매상품의 명칭에 관한 사항  
판매상품의 명칭은 “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< >”으로 함.  
다만, ( ) 부분은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 등의 명칭으로 한정하며, < >부분은 자동갱신 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한하여 <갱신형>이라는 문구를 추가함.

<예시>

- ① 자동갱신특약 미첨부 계약 : 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

② 자동갱신평약 첨부 계약 : 에이스개인신용상해보험<갱신행>

- 5)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인 경우 회사의 확인 사항  
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대출금융기관인 경우 지급보험금 한도내  
에서 피보험자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을 확인함
- 6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- (1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  - ①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  -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  - (2) 기타
    -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  -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